

# 일본의 잔류허용기준 PLS와 수입허용량 제도

2006년 도입 5년째 맞는 독립적 MRL 설정도구인 PLS, 비교적 잘 실행  
무역장벽 해결 위한 수입허용량, 반드시 MRL Positive List와 병행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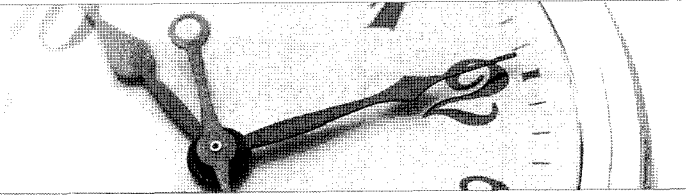
Hiroo Wakimori, 몬산토 제팬

일본의 잔류허용기준(MRL) 설정은 후생노동성 및 환경성, 농림수산성과 최근 추가된 식품안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확정되었지만, 세부업무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고 일본농약공업회(JCPA)에서 각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새로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언제 어떻게 이 절차가 시작될지는 미지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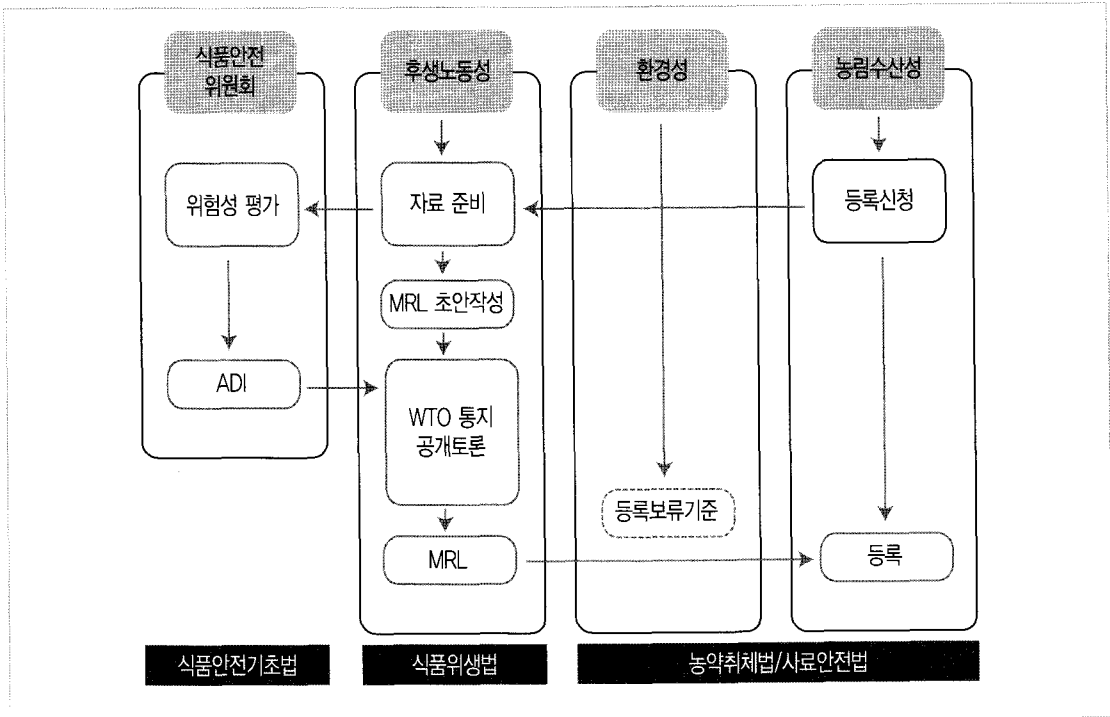
식품안전기초법은 식품안전위원회가 담당하고, 식품위생법은 후생노동성이 맡고 있으며, 환경성과 농림수산성은 각각 농약관리 규정을 담당하고 있다. 농약등록은 농약취체법에 규정

되어 있으며 농림수산성에 등록을 신청하고 자료는 1일섭취허용량(ADI)설정과 MRL 초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후생노동성에 제출한다. MRL이 설정되면 세계무역기구(WTO)로의 통지와 공개토론이 동시에 시작한다. 이전에는 농약관리규정에 등록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과정이 복잡하지 않았다.

MRL이 미 설정된 농약은 환경성의 등록보류기준으로 ADI를 설정한 후에 농림수산성에서 등록이 완료되어 판매할 수 있다. 등록보류기준 규정은 MRL과 비슷하며 30년 이상 오래



■ 새로운 농약등록 및 MRL 설정 절차



된 농약만이 등록보류기준에 적용되었으나 2006년까지 MRL로 대체되었다.

**일본의 MRL Positive List**

과거에는 MRL Negative List가 사용되었다. MRL은 등록된 작물과 농약에 대해서만 설정되었다. 미등록 농약이 작물에서 검출되었을 경우, 그 작물을 수확하고 시장에 유통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MRL Positive List를 도입했다. 중요한 점은 한계를 0.01로 적용한 것이며 PLS제도는 일본 내에서 상당한 이슈가 되었다.

「Default 값」 설정은 인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준으로 등록되지 않은 작물과 농약에

「0.01ppm」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EU-MRL 시스템과 유사하다. 무역장벽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외 MRL을 도입하였는데 일본은 식품국가로 수입식품에 대한 장벽을 제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정작물 및 성분의 자료검토 전 단계의 MRL, 즉 잠정 MRL을 설정한다. 이는 식품안전위원회에서 MRL 설정을 위한 위해성평가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 MRL이라 정의한다.

**잠정 MRL List 설정 방법**

신규 MRL 설정 우선순위를 보면, 먼저 2006년에 설정된 기 MRL, 국제 MRL(Codex 기준), 확고한 MRL시스템을 갖춘 지역 즉, 미

■ MRL 설정 예

작물	등록	잠정 MRL	기 설정 MRL	코덱스 MRL	5개국 MRL	비고
벼	○	0.5	0.5			기 설정 MRL
밀	-	0.2		0.2	0.5	Codex MRL
보리	-	0.01				Default 값
콩	-	0.5			0.5	5개국 MRL
옥수수	-	0.01				Default 값
감자	○	1	1			기 설정 MRL
암	-	1			1	5개국 MRL

작물	등록	잠정 MRL	기 설정 MRL	코덱스 MRL	5개국 MRL	비고
무	-	0.01				Default 값
순무	-	0.01				Default 값
배추	○	5	5	2		기 설정 MRL
양배추	○	5	5		2	기 설정 MRL
오렌지	-	2			2	5개국 MRL
사과	○	2	2		3	기 설정 MRL
배	-	0.01				Default 값

국, 유럽,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 국가의 MRL이다. 예외로는 LOQ > Default값(0.01 ppm)인 경우 LOQ를 잠정 MRL로 결정한다.

**Default 값 보완 위한 수입허용량(IT)**

일본에 농약성분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농약성분이 등록되어 있으나 특정작물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식품은 2005년 이후 후생노동성에서, 사료는 2010년 이후 농림수산성에서 관리하고 있다.

수입허용량 설정은 누구나 후생노동성이나 농림수산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잔류자료는 GLP성적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EU의 안전성평가와 MRL 자료, 초록 및 GAP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에서는 전체적인 위해성 평가와 잔류설정에 대해 식품안전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다.

농약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는 식품안전위원회는 업무량 증가로 규모가 점점 커져 5개 분야에 38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2개 분야는 신규 농약, 3개 분야는 기존 농약의 잠정 MRL

설정을 담당하고 있다.

잠정 MRL List 이후는 식품안전위원회가 ‘잠정’ MRL을 ‘확정’ MRL로 전환하기 위해 ADI를 평가한다. 그러나 식품안전위원회는 5년 내 758개 농약에 대한 잠정 MRL을 평가해야 하는데다 잠정 MRL에서 TMDI or EDI > ADI가 발생할 경우의 처리 문제, 자국내 ADI와 국제 ADI(JMPR)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어떤 ADI를 적용하는지에 대한 문제 등 극도로 많은 업무량과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등의 현안에 직면해 있다.

**결론**

2006년 도입되어 5년째를 맞고 있는 PLS제도는 비교적 잘 실행되고 있으며 농약등록 과정과는 독립적인 MRL 설정 도구로서 무역장벽 해결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수입허용량은 반드시 MRL Positive List와 병행되어야 한다. 참고로 일본 MRL 데이터베이스 주소는 <http://www.m5.ws001.squarestart.ne.jp/foundation/search.html> 이다. ©